

## 오산시통·반운영규칙

제정 1989년 1월 1일 규칙 제 24호  
개정 2001년 3월 6일 규칙 제459호  
일부개정 2020년 12월 11일 규칙 제89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오산시통반설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·해촉)** 통,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·해촉시는 위·해촉장을 교부하고 위·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.

**제3조(반상회)**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으로 토의한다. <개정 2020. 12. 11>

1. 지역의 현안에 관한 사항
2.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
3. 유관기관의 새소식 홍보
4. 삭제 <2020. 12. 11>
5.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
6. 반원 여망사항 토의
7. 민방위 훈련실시 등

**제4조(반상회 운영)** ① 동장은 행정 시책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11>

② 반상회는 다수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. <개정 2020. 12. 11>

③ 삭제 <2020. 12. 11>

④ 삭제 <2020. 12. 11>

[제목개정 2020. 12. 11]

**제5조** 삭제 <2020. 12. 11>

**제6조(건의사항 존중처리)**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한다.

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결정사항 실천)** 반상회에서는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.

**제8조** 삭제 <2001. 3. 6>

**제9조** 삭제 <2020. 12. 11>

**제10조(운영세칙)** 통·반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1. 3. 6 규칙 제45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20. 12. 11 규칙 제89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